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납본 대상 온라인 자료 보완〉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70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오경 · 박수현 · 박 정 · 박홍배 · 윤준병 · 박홍근
조계원 · 김교홍 · 한병도 · 진성준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 의안번호 : 1507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
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국회도서관이 수집할 수 있는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에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②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납본하여야 하는 온라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국제표준자료를 부여받은 자료 → 국제표준자료를 부여받은 자료,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된 학위논문,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하려는 것임(안 제7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의 <u>온라인 자료를</u> 수집할 수 있다.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① ----- ----- ----- ----- ----- ----- -----온라인 자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를 포함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u>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u>	③ ----- <u>도서관자료</u> ----- ----- ----- <u>납본하</u>

현행	개정안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 ⑥ (생략)	여야 하고,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2.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의 온라인 자료¹⁾를 수집할 수 있고,

1)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를 말함.

「국회도서관법」 제13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서관자료”, “도서관 서비스”,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제3조를 준용한다.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²⁾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함.³⁾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3조⁴⁾에 따른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에 웹툰, 웹소설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및 웹소설은 납본대상 온라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⁵⁾

그런데, 웹툰 및 웹소설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가 2025. 12. 31.자로 종료되고 2026. 1. 1.부터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⁶⁾에

2) 국제표준자료번호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도서 및 연속간행물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도서에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되고 연속간행물에는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가 부여됨.

「도서관법」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출판업체 또는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3)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온라인 자료에 대한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는 2025. 6. 4. 시행되었음. 2025. 11. 30. 기준 국회도서관은 전자책 10,250책을 납본받았음.

4)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3조(종류)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

2. 웹자료

1) 문자자료: 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웹툰, 웹소설 등

2) 음성·음향자료: 음악자료(음원),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음향자료(효과음) 등

3) 영상자료: 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 사진, 회화 등

5) 참고로,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정책」을 마련하고 해당 정책에 따라 온라인 자료를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 음성자료(강의, 연설, 인터뷰, 오디오북 등),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등),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로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음.

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른 콘텐츠 식별체계가 부여됨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웹툰 및 웹소설은 납본대상 온라인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개정안 제7조제3항은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 근거를 마련하여 웹툰 및 웹소설의 납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⁷⁾

다만,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35조⁸⁾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를 납본대상에 명시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① 현행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4항⁹⁾에 따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학위논문의 디지털 파일은 국회도서관의 납본대상에 해당하여 현재 납본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¹⁰⁾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중복되

1. “**식별체계**”란 식별 가능한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 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개별 콘텐츠에 유일한 코드(이하 “식별자”라 한다)를 부여·관리하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 간의 연계표준으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10.0058)를 말한다.

7) 국회도서관은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8)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9) 「**국회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④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그 학위논문이 간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학위논문 2부와 디지털 파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10) 국회도서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디지털 파일 납본 현황(2023. 1. ~ 2025. 11.)

(단위: 건)

구 분	2023	2024	2025
석사학위	20,619	20,939	22,092
박사학위	9,838	10,407	10,931
계	30,457	31,346	33,023

* 자료: 국회도서관

는 측면이 있고, ② 개정안에 따르면 학사학위 학위논문도 납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여되는 학사학위의 양과 학술적 의의를 감안할 때 납본을 통한 학사학위의 수집·보존 필요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도서관은 ① 학위논문의 경우 비매품이므로 납본 보상의 대상이 아닌데 개정안에 따르면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② 현행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4항을 근거로 학위논문의 디지털 파일을 수집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입장임.

한편, 공공기관등은 간행물의 관리를 위하여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¹¹⁾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간행물에 표기하여야 함.

개정안 제7조제1항은 국회도서관이 수집할 수 있는 공공기관등의 온라인 자료에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도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해당 자료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아울러, 최근 「도서관법」이 개정(2026. 6. 2. 일부개정, 2026. 12. 3.

1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되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납본 대상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국제표준자료를 부여받은 자료,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된 학위논문(석사·박사), 콘텐츠 식별체계에 의하여 코드를 부여받은 전자출판물로 구체화되었으므로,¹²⁾ 개정안 심사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

12)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학위논문으로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에 따라 코드를 부여받은 자료